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협력

양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제20.3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1.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포럼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포럼은 다른 포럼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20.4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다른 협의 규정상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분쟁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서면통보로 제시한다. 협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3.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개최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히 한쪽 당사국이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되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믿는 때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

5.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 또는 지명하는 중개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방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야 할 것이다.

6.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는 이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제20.6조 패널의 설치

1.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패널을 설치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그 요청서에 협의가 열렸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を提供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제20.7조 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15일 내에 각각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다. 양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의 어느 쪽 당사국이든 그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의장을 지명할 것이 기대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된다.

2. 패널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에도 고용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

격으로도 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원래의 패널위원 선정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패널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4. 모든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5. 어느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러한 합의를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그 패널위원을 교체한다.

제20.8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의 기능은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해당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2. 패널이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피소 당사국에게 그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제20.9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규정된 절차 규칙을 준수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0.6조에 따라 패널 설치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를 판
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3.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러
하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와 패널의 그 밖의 비
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0.10조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장에 규정
된 모든 관련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
하여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
다.

2.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20.11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후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12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패널이 그 120일의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
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에 성문화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
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4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패널은 다수결로 결정을 취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모든 의견은 익명이다.

7.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그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20.12조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즉시 또는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서 판정된 불일치를 제거한다.

제20.13조 합리적인 기간

1.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로부터 30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원래 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2.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부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4.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30일 전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준수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제20.14조 이행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자신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나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래 패널에 회부되는 것을 포함하여 패널 절차에 회부된다.
3.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패널 절차에 관한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의 절차에 적용된다.

제20.15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된 조치를 정하여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권고에 맞추어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20.14조의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피소 당사국이 서면으로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국이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30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한다.
2.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와 결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권고의 완전한 이행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보상은 이 협정에 합치한다.
3. 정지할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파생된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래 패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래 패널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정지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제4항에 따른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 제20.6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6. 패널은 요청의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7. 제소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허나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

제20.16조 정지 이후의 절차

1. 제20.15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불합치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통보 접수 후 60일 내에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2. 패널은 그 사안이 회부된 후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3.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제20.17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부속서 20-가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 절차 규칙은 제20.9조(절차 규칙)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전달하다란 전자적 전송에 의하거나 지면 형태의 전달 매체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란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패널 절차 진행 중 제출된 모든 서면 자료를 포함한다.

패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소당사국이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3.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행정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과 각 패널위원에게 모든 서면 입장의 각각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전달된다.
8.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 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9.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10.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한국 또는 중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 개시

1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15일 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한다.

최초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2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 전달일 후 2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의 운영

13.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에 그 심의에 보조인,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출석하는 어떠한 인도 양 당사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논의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16. 보고서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심리

18.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 후에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한다. 의장은 그 결정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0.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1.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2.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인력, 통역사 및 번역사,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문인만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3.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4.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양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보충적 서면 입장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 후 2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비밀 유지

26.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제출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쟁에 대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27.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패널위원이든 접촉할 수 없다.

28.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할 수 없다.

기한 계산

29. 특정 일자 또는 사건의 전이나 후 수일 내에 이 협정 또는 이 부속서에 따라 어떤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어떤 일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 이 부속서 제10항의 적용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작업 언어

3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절차의 작업 언어는 영어이다.

부속서 20-나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 구성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중개인이란 제20.5조(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따라 중개절차를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구성원에 관하여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패널위원은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4.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만 전달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5.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9.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10. 패널위원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한다.

비밀유지

12.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개인

15. 부속서 20-나에 기술된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